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월 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되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 동일·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나. 임시허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9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 동일·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2. 14. ~ 03. 26.)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영 제19조의19제5항”을 “영 제19조의19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제16조의2제1항·제10항”을 “제16조의2제1항·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제16조의2제3항 후단”을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제16조의2제3항 후단”을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 중 “제16조의2제3항 후단”을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6조의2제11항”을 “제16조의2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9서식 중 “제16조의7제1항·제8항”을 “제16조의7제1항·제9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연구개발특

구위원회(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의10서식 중 “제16조의7제4항 후단”을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5항, 제19조의20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8항, 제19조의20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11서식 중 “제16조의7제4항 후단”을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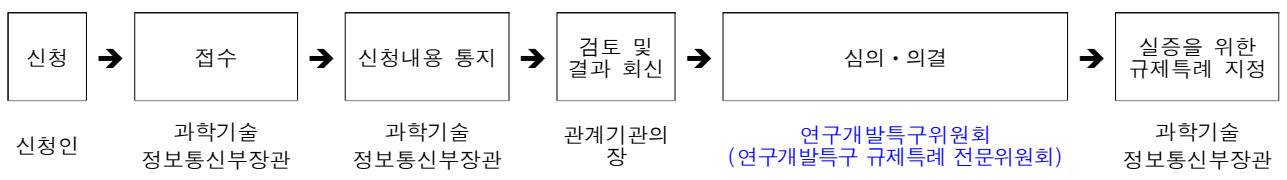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생략)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의1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 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9제8항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청인 제출서류	실증특례 신청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들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실증특례 변경신청의 경우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처리 절차



별지 제5호의3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00. 00.>

실증특례 지정서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실증특례 지정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신기술의 명칭		
추진 지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연장된 유효기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지정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 제3항, 제19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별지 제5호의4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5. 00. 00.>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들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 신청인	→ 접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 서류검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 재심의·의결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별지 제5호의5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5. 00. 00.>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존 실증특례 신청내용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신기술의 명칭 및 실증의 주요내용			
	추진 지역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실증범위			
지정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사유	연장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연장 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4.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 신청인	➔ 접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 서류검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 유효기간 연장 결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 결과 통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별지 제5호의6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6서식] <개정 2025. 00. 00.>

법령정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실증특례 신청내용	신기술의 명칭(지정번호) 및 실증의 주요 내용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 요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	
	요청인의 의견 ※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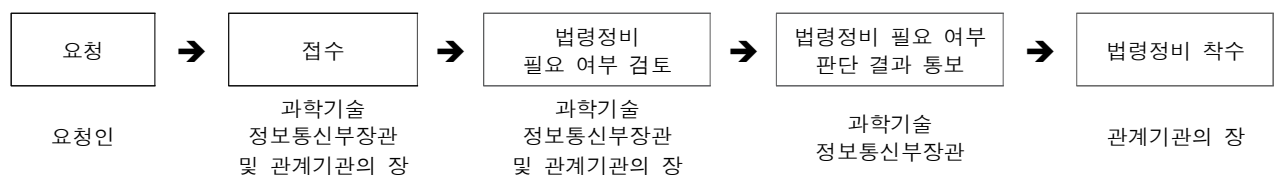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나.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별지 제5호의9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25. 00. 00.>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신기술 서비스·제품	명칭	
	주요내용	
임시허가 신청사유	[]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1항, 제19조의2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를(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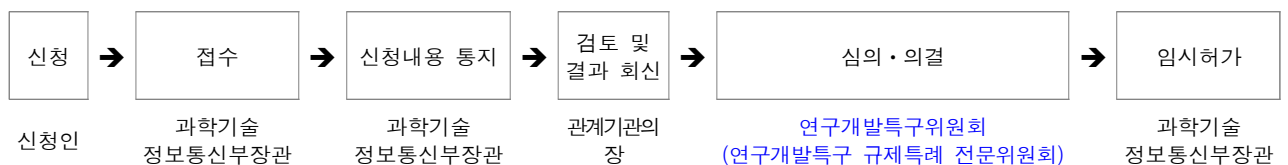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임시허가 신청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경우	1. 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처리절차



별지 제5호의10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0서식] <개정 2025. 00. 00.>

임시허가서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신기술 서비스· 제품의 명칭			
사업 지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연장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허가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5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8항, 제19조의20 제3항, 제19조의2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별지 제5호의11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1서식] <개정 2025. 00. 00.>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존 임시허가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사업 지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허가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5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장신청 기간 및 연장 사유	연장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연장 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유효기간 연장 결정	➔	결과 통지
신청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